

강원관광대학 국가 근로장학생 관리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6호 전문대학 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근로봉사를 원하며 근로정신이 투철한 학생으로 한다.

제 3 조 (근로기간) 근로기간은 학사일정에 의한 수업기간 중에 근로 봉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의 성질등 해당 부서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하계, 동계 방학기간에도 근로할 수 있다.

제 4 조 (근로시간) 근로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학사일정에 의한 수업기간 중 일 때 오전9시부터 오후6시 사이 중 학생이 선택하여 주당 10시간에서 20시간 이내로 한다. 주말, 휴일, 공휴일등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으로 한다.
2. 방학 기간 중 일 때 오전9시부터 오후6시 사이 중 학생이 선택하여 주당 최고 40시간 이내로 한다.

제 5 조 (근로 장소 및 내용) ① 근로 장학생이 근로할 수 있는 장소는 학생의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한다.

1. 도서관, 실험실습시설, 연구소, 시험측정기관, 학교기업, 행정실,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 내 시설
 2.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등 사회복지시설 및 전공 관련 산업체 등 대학 외 시설 다만, 외부 기관에 근무할 경우 외부 기관 간에 근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근로 내용은 학생 신분에 부응하는 작업으로 각 학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배정한다.

제 6 조 (필요인원 결정) 근로학생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매 학기말 소정기간 내에 운영계획서를 작성, 교학처에 제출하고 교학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금액이 결정되면 이를 장학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필요 인원을 배정, 결정, 해당부서로 통보한다.

제 7 조 (근로 장학생 선정 절차)① 제6조에 의거하여 필요 인원이 배정 결정된 근로 장학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근로장학생 신청 공고를 한다.

② 공고된 일자리에 근로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다음의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에 근로신청을 한다.

1. 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학생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 본인 또는 학부모가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증명서 1부.

3. 졸업 후 취업 등 경제 활동조사에 대한 동의서

4. 성적증명서 1부(공통)

5.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본 대학별에 배정된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성적우수자 순으로 선발한다. 단, 1호, 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배정된 인원보다 적을 경우 학과장의 추천서 또는 성적우수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대학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근로 장학생을 선정한다.

제 8 조 (근로관리) ① 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전담자를 두며 그 운영 전담자는 교학처의 장학담당자로 한다.

② 근로장학생이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근로장학생의 담당자를 두며, 근로 학생 담당자는 출근부를 당월 말까지 작성하여 운영 전담자에게 제출한다.

제 9 조 (지급금액) 지급금의 조정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10 조 (지급방법) ① 근로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월단위로 하되, 매월 지원금액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근로장학생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를 그만 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월 미만 단위로 지원금액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11 조 (대학지원금의 관리) ① 대학에 교부된 근로장학 지원금을 산학협력단 회계를 경유하여 교비회계의 별도 계정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근로 장학 지원금의 집행 실태를 반기별로 교육과학기술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매년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교부된 대학지원금의 집행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국가근로장학생 모집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